

경운대학교 진로·취창업지원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학생들의 진로·취창업지원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운대학교 진로·취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사항
2.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학생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전문기관 연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제3조(주관 및 운영) ①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주관부서는 취업지원센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12.01.>

1.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진단 및 컨설팅
2.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총괄
3.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
4.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②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2.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성과 보고
3.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행정지원

제4조(조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1.23., 2021.12.0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취업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위원은 해당 경력과 자격이 인정되는 전임교원, 교직원, 외부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부서)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주관 및 시행부서(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01.>

1. 진로지원센터

2. 취업지원센터
3. 창업교육센터
4. 대학일자리센터
5. 현장실습지원센터
6. 국제교육원
7. 기타 진로·취창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

제7조(운영절차) 위원회는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개최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제8조(환류) 위원회는 진로·취창업지원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부서(센터)에서 상정한 편성·운영 계획과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한 뒤,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로 상정한다. <개정 2020.01.23.>

제9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취업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2.01.>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2019.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운대학교 취창업지원위원회 규정은 경운대학교 진로·취창업지원위원회 규정으로 대체한다.

부 칙 <2020.01.23.>

1.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

부 칙 <2021.12.01.>

1.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